

의안번호	2200809
의 퇴 인	박범계의원
회 답 일	2024. 7..
추계번호	24D1260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의4 신설(감찰관 임용)	감사원은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감찰담당 감찰관을 원장 직속으로 운영	의무규정
	안 제24조제6항 신설(감찰 사항)	상시 공직감찰은 제1항1)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개시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함(제6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의4 신설(감찰관 임용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4조제6항 신설(감찰 사항)	

1) 이 법 제24조(감찰 사항)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.

1. 「정부조직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
2.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
3.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
4.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

2. 상세 사유

- 내부 감찰 사무 담당 감찰담당 감찰관 운영(안 제16조의4 신설)
 - 개정안에 따라 감사원은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감찰담당 감찰관을 원장 직속으로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감찰담당 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찰에 필요한 인력규모, 수행 감사 건수 등의 예측이 필요한데, 현 단계에서 이에 대한 추정이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- 상시 공직감찰 실시(안 제24조제6항 신설)
 - 개정안에 따라 상시 공직감찰은 중앙행정기관과 공무원, 지방자치단체와 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개시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상시 감찰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그러나 현 단계에서 상시 공직감찰이 필요한 사항 등의 추정이 어려워 현 단계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- 따라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